

2021학년도 1학기 신촌·국제캠퍼스 학부생 입대휴학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 이후 입대 예정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1. 5. 17.(월)이전 입대할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 5. 18.(화) 이후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

※ 단, 학기 2/3선(5월 17일) 해당일부터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와 성적이 인정되어 휴학 신청 일자에 관계 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관련 근거: 학사에 관한 내규 제25조, 제36조)

■ 신청 기간

휴학신청 및 승인시점	휴학 신청 자격	수업료 반환
2021. 2. 1.(월) 10:00~ 3. 15.(월) 17:00	2021. 3. 15.(월)까지 입대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휴학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단, 2021. 3. 15.(월)까지 입대하지 못하는 자는 일반휴학을 2021. 3. 15.(월)까지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	수업료 전액
2021. 3. 16.(화) 9:00~ 5. 17.(월) 17:00	<u>2021. 3. 16.(화) 이후 입대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u> 하며,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률 적용
2021. 5. 18.(화) 9:00~ 8. 31.(화) 17:00	2021. 5. 18.(화) 이후 입대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하며,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 2021학년도 1학기에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라도 입대휴학 신청은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만 가능	수업료 반환 없음

■ 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

- 가. 신청 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입대휴학] 신청 및 증빙서류 등재(입영통지서 첫 장, 2MB 이하)
- 나. 승인 방식: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된 증빙서류를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 다. 입대휴학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일반휴학과 승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 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라. 유의사항
 - 1)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 PDF, 한글 파일 형태로 등재 가능
 - 2) 증빙서류는 2MB 이하일 경우에만 등재 가능

■ 수업료 반환

휴학승인시점	수업료 반환률	비고
2021. 3. 15.(월) 17:00 까지	전액	
2021. 3. 31.(수) 17:00 까지	수업료의 5/6	
2021. 4. 30.(금) 17:00 까지	수업료의 2/3	
2021. 5. 17.(월) 17:00 까지	수업료의 1/2	학기 2/3선

- 가.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
- 나. 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 휴학 승인일로 부터 업무일 기준 약 10일
- 다. 반환 계좌 :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
 - 1)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
 - 2)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 방문(학생회관 218호, 02-2123-2126~7)하여 장학금 취소 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학기 인정

- 가. 학기 2/3선(2021. 5. 17.) 전 입대
 -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해당 학기는 입대 휴학 학기로 인정(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나. 학기 2/3선(2021. 5. 17.)부터 입대
 -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대체함.
 - 단,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에게 입대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수업 및 평가 대체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
- 다. 관련 규정: 학사에 대한 내규 제25조
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

- 가. 학기 2/3선(2021. 5. 17.) 전 입대: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나. 학기 2/3선 후 입대: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휴학학기’ 수에 포함됨
- 다.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라. 일반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5년제) 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을 넘지 못함
- 마. 휴학학기 수 조회 :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자료조회]

■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

- 가.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귀가증명서 등)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 나.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재학 또는 일반휴학)로 환원됨
- 다. 재입대가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에서 ‘입대휴학원서’를 내려 받아 입영통지서와 함께 교무처 학사지원팀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재승인 받음

■ 유의사항

- 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 (캠퍼스내/간 복수전공은 해당사항 없음)의 첫 학기에는 질병, 임신, 출산,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 나. **2021년 8월 졸업신청자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졸업신청 취소를 해야 휴학 신청 가능**
- 다.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문의: 학술정보원 이용자통합서비스팀(02-2123-6100)
- 라.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
- 마.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시기: 휴학 승인 시점부터 복학허가 후 당해 학기 등록금 완납 전까지
- 바. 복학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 등록금 완납 전까지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복학예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사. 전역 후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 전입 처리되나 전역 전 복학 허가자는 개별 신고하여야 함(예비군연대, 02-2123-8461)
- 아. 입대휴학 관련 상세 규정: ☑학칙 제8장, ☑학사에대한내규 제6장, 제8장 등
학교 홈페이지 ⇨ 연세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 본문 ‘휴학’ 검색하여 확인 가능

자. 휴학 관련 주요 문의처

- 1)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 학생건강공제회(02-2123-3350)
- 2) 증명서 발급: 종합서비스센터(02-2123-3200)
- 3) 교무처 학사지원팀: 휴·복학, 수업, 성적, 졸업 관련 안내(FAX : 02-2123-8611)
 - ☎ 02-2123-2091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 ☎ 02-2123-2097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약학대학)
 - ☎ 02-2123-2087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 ☎ 02-2123-2095 (학부대학)
- 4) 휴학관련 FAQ: 학교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행정 ⇨ 휴학